

## 大學院間의 協力體制

劉 仁 鍾  
(高麗大 教育學科 教授)

### I. 머리말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은 外的으로는 커다란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內的으로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產業社會가 요구하는 人材의 種成과 開放社會가 요청하는 知的 무장으로의 갈망은 우리 나라 高等教育을 急進的으로 成長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또한 각 高等教育機關은 이와 같은 새로운 要請에의 適應을 위해서 각기 獨自의 對應策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高等教育의 普遍化 傾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上昇됨으로써 大學은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었다. 즉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維持, 대학교육의 效率의 運營, 大學間의 均衡 있는 발전, 大學財政의 확보 등 당면 과제를 갖게 되었다.

現代社會에서의 大學教育은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고, 運營에 있어서도合理化, 專門化 및 協力化 關係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는 大學들이 좁은 地域에 많은 수의 大學들이 운집하여 있고, 大學間의 거리에 있어서도 가깝게 위치하면서도 大學間의 協力關係가 없이 獨自의으로 경쟁 일변도에서 운영되

고 있어 國家的立場에서 볼 때나, 大學自體에서 볼 때 커다란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大學은 大學間의 協力體制를 구축함으로써, 유능한 教授의 相互補完을 이루할 수 있고, 教育施設과 教育機器의 共同活用으로 經費를 절감할 수 있으며, 圖書 및 研究施設을 協同으로 사용해 함으로써 教育의 質向上을 도모할 수 있고, 教育 프로그램의 共同設講 등으로 학생의 밀도 있는 教育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여야 할 時點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協力方案의 모색은 大學教育의 經費絶減, 大學教育의 質向上, 그리고 大學教育의 均衡發展이라는 면에서 매우 뜻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大學教育의 協力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大學院 教育水準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協力關係가 運營上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全國的인 규모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 協力關係가 全國的인 규모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大學院教育 중심의 協力方案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이 協力方案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먼저 美國의 大學間 協力事例를 소개하고 韓國 大學院教育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美國의 大學間 協力事例

大學間에도 相互補完的인 協同을 위한 協力體制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美國 大學들이다.

學問의 急進的인 發展은 知識의 爆發이라는 현실을 냥게 하였고 그 결과로 個別 大學은 모든 知識과 學問을 망라할 수 있을 만큼 人力과 施設 등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 즉 個別 大學들은 資格을 갖춘 教授의 不足, 박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實驗器機 구입의 어려움, 圖書量의 絶對不足 등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학생들의 學問的 力量과 要求條件은 증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學問의 발전이라든가 能率的인 學生教育 그리고 效果的인 大學運營 등의 諸般 問題가 大學間의 上호보완적인 協力を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美國 大學間相互協同의 역사는 이미 192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은 그 규모와 관계 없이 상호 협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大學間相互協同의 形態와 內容은 매우 다양하다. 주로 大學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大學間相互協同은 1960년대 중반기에 1,000여 전에 달했으며, 1975년에는 3,000여 개의 高等教育機關間に 형성되고 있는相互協同이 1,000여 전에 달하고 있다.

大學協力體制는 州立大學間에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私立大學間에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예로는 州立·私立大學間에 형성되기도 한다. 地域的으로도 다양해서 1개 州 안에 있는 大學間, 1개 州와 인접한 州에 있는 大學間, 地域의 으로 분포되어 있는 大學間, 그리고 全國의 으로, 때로는 國際間에도 協力體制는 이루어진다. 협력하는 內容面에 있어서도 學點交換은 물론이 거니와 共同學位授與, 共同備品購入, 共同施設投資 등 다양한 協同을 하고 있다.

1개 州 안에 있는 大學間의 協力體制가 잘 이루어진 예로는 북캐롤라이나州에 있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州立),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州立) 그리고 名門인 Duke University 등 3개 大學이 共同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

른바 三角研究機關(Research Triangle Institute)을 들 수 있다. North Carolina 州의 Chapel Hill, Raleigh, Durham에 각각 위치한 이 3개 大學이 共同으로 應用研究所를 설치하고 大單位 電子計算所를 운영하면서 學問의 交流와 地域社會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1개 州 안의 또 다른 좋은 예로는 New York 州에 있는 SUNY at Buffalo(州立), Cornell University(準州立), University of Rochester(私立) 그리고 Syracuse University(私立)間に 專門教師 및 教育行政家養成計劃을 들 수 있다. 1961년에 착수된 이 프로젝트는 6년 간격으로 Ford財團의 支援을 받으면서 成功的으로 수행해 오는 좋은 예이다.

州와 州間에 大學協力體制를 형성하여 成功的으로 協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New England 高等教育協議會(New England Board of Higher Education)를 들 수 있다. 同 協議會는 New England 州의 6개 州立大學校間に 學點交換을 주관하고 있으며, 年間 50개 學科의 交換科目을 설정하여 350명의 학생이 學點交換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한 예로는 美國 南部地方의 대표적인 대학교를 망라한 南部地方 教育協議會(Southern Regional Educational Board)로서 특히 農林學, 生物學, 經營學 分野의 夏期學校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수한 分野의 교과서를 共同으로 開發하여 출판하고, 일부 大學校에서는 입학 절차를 통일하여 학생모집에 공동 보조를 취하는 일까지 협동하고 있다. 同 教育協議會의 役割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教育 TV의 共同開發로서 이의 計劃, 예산 지출 등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南部地方의 60개 이상의 看護學校의 大學院教育이 이 教育協議會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地域의 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大學間의 協力體制는 州內 혹은 州間 協議體가 해당 州 또는 인접 지역에 국한된 데 비하여 州別 구분을 초월한 協同體를 뜻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大學協同委員會(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를 들 수 있는 데, 美國 中西部 7개 州(Michigan, Ohio, Indiana, Illinois, Wisconsin,

sin, Minnesota, Iowa)에 산재해 있는 9개 주립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Univ. of Illinois, Univ. of Iowa, Univ. of Minnesota, Univ. of Wisconsin, Michigan State Univ., Ohio State Univ., Indiana Univ., Purdue Univ.)와 2개의 사립대학교(Univ. of Chicago, Northwestern Univ.)가 同 委員會에 소속하고 있다. 이들 大學들은 모두 綜合大學校들로서 많은 博士學位課程을 개설하고 있으며 醫科大學, 法科大學 등 專門學校를 설치하고 있는 中西部地方을 대표할 수 있는 大學들임에도 불구하고 大學校間의 協同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1958년에 발족된 同 委員會의 目的은 11개 會員大學校間에 協同의in 노력을 촉진하고, 相互協力を 통해 바람직한 研究 및 教授 영역을 발굴하며, 특히 大學院 教育과 研究를 위한 協力を 주도함으로써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教育과 公共奉仕의 質을 改善·向上시키는 것이다. 同 委員會의 업적은 창설된 지 5년 후인 1963년에 그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1개 大學校間의 學點交換
- ② 圖書館, 實驗室의 共同利用 및 特殊科目的 公開
- ③ 西歐言語 이외의 26개 外國語에 대한 집중 적인 教育을 위한 共同 夏期學校의 開設
- ④ 外國留學 增進을 위한 協力
- ⑤ 中西部地方의 經濟成長 촉진을 위한 協力
- ⑥ 同窓會 관계 刊行物의 共同準備
- ⑦ TV를 통한 科目的 共同開發 및 製作

또 한 예로는 中西部 大學校 研究協議會(Mid-western Universities Research Association)를 들 수 있다. 이 協議會는 1954년에 발족되었는데 中西部 9개 州(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Ohio, Wisconsin)에 산재해 있는 15개 주요 大學校를 會員大學으로 가지고 있다. 同 協議會의 주요 목적은 高에너지 核物理學 分野의 實驗研究 및 教育施設을 설치하여 會員大學의 모든 科學者들이 이 施設을 共同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協議會의 활동은 聯邦政府機關인 國立科學財團, 海軍省研究機關, 原子力委員會 등의 후원으

로 유지되었다. 이 協議會의 활동이 부수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純粹自然科學이나 技術工學 分野뿐만 아니라 社會科學 分野도 大學校間에 協同이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全國 規模의 大學協力體制의 예로는 1956년에 발족한 教育行政大學協議會(University Council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를 들 수 있다. 이 協議會의 會員은 教授 個人資格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大學別로 가입(大學會員制)하였다. 會員大學의 地域的인 分布는 全國의이나 이 協議會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會員大學이 되고 싶은 大學에서 教育行政 分野의 博士學位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발족 당시에는 全國에서 23개 大學이 모여 Columbia 大學校에 본부를 두고 있다가 3년 후인 1959년부터는 Ohio 州立大學校로 본부를 옮겼고, 1980년부터는 다시 Rochester 大學校로 옮겨지면서 會員大學數도 47개로 늘어났다. 同 協議會의 創設目的은 會員大學間에 教育行政家의 職前教育 및 現職教育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理論的인 研究를 촉진하며, 研究를 통해서 얻어진 資料들을 會員大學에 보급하는 것 등이었다.

미국의 大學들은 그 특유한 獨自性과 自律性을 지켜 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비록 소규모의 州立大學들이 어느 정도 州政府의 통제를 받아오긴 했어도 대부분의 大學들이 적어도 7, 8개의 特수한 분야는 다른 유사한 대학과는 다른 特성을 지닐 수 있다는 能力を 자랑해 왔다.

그러면 이제, 왜 美國의 大學들이 전통적으로 자랑해 오던 獨自性과 自律性을 회생해 가면서 까지 점점 많은 대학들이 大學協力體制를 이루어야만 했는가, 大學協力體制가 大學校間에 어떻게 協同할 수 있도록 하는가 등을 大學協力體制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大學協同委員會(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大學協同委員會는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 中西部 7개 州에 산재해 있는 11개 대규모 綜合大學校들로 구성되었다. 會員大學들의 共同적인 특징은 모두 研究指向의in 大學院中心 大學이면

서도 醫學, 法學 등 고도로 專門化된 專門大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회원대학들이 모두 한결같이 동일한 것만은 아니다. 회원대학 가운데 Chicago大學校는 私立大學校이면서 10,000여 명 정도의 가장 우수한學生集團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이다. 다른 會員大學들은 학생들의 學問的 水準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에 있어서도 Chicago大學校의 5,6배에 이르며, Northwestern 大學校를 제외하고는 모두 州立大學이다. 또 어떤 會員大學은 전 州에 分校를 가지고 있는 대학도 있다.

會員大學들간에는 운동경기 면에서 뿐만 아니라 學問적으로도 국심한 경쟁 관계를 이루면서,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中西部 名門大學으로 발전해 온 大學들이다. 會員大學의 學生數는 50萬, 教授數는 4萬, 그리고 수십억 달라에 해당하는 校地, 校舍, 圖書館, 研究施設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全國 大學에서 배출되는 博士學位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각 대학이 대규모의 名門大學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해 왔으면서도 대학간에 서로 협동해야 한다는 協力의 必要性을 다 같이 느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회원대학들이 研究指向의이고 高度로 專門化된 醫學, 法學, 工學, 經營學, 教育學 등의 專門大學들과 學科들을 설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의 學生이나 教授交流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끼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회원대학 가운데 어느 大學도 완전한 프로그램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한 東南亞나 아프리카 言語學科의 開設과 그에 따른 學生交流에 관심을 집중해 왔다. 회원대학들이 共同으로 協力하여 동남아나 아프리카 言語學에 관한 여름학교를 開設하고 또 록키산맥 地方에 地質學 캠프를 공동으로 設置함으로써 會員大學간에 중복을 피하게 되므로 예산상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회원대학간에 오늘날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운영 방침 가운데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協力を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 회원대학의 同意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게는 두 大學간에 그리고 많게는 11개 全會員大學들간에 協同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大學協同委員會(C.I.C.)는 회원대학의 教學담당 부총장들로 구성된다. 同委員會는 집행소위원회를 비롯한 準常任委員會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수의 非常任 特任小委員會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小委員會는 회원대학의 지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시카고의 O'Hare 공항의 小會議室을 빌려 회의를 함으로써 당일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小委員會의 運營經費는 大學協同委員會가 부담하지 않고, 協力を 필요로 하는 회원대학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小委員會를 구성한 당해 大學들이 운영비를 부담한다. 大學協同委員會는 연 3회씩 그리고 小委員會는 필요에 따라 수많은 會合을 갖는다. 大學協同委員會(C.I.C.)의 운영비는 처음에는 카네기財團의 지원을 받아 유지해 왔는데 요즈음에는 회원대학들이 낸 회비로써 운영해 오고 있다. 회원대학들이 낸 회비는 大學協同委員會 事務局의 職員俸給, 事務室 貸與費, 一般經費, 職員들의 여비로 쓰인다.

대학협동위원회는 간부직원으로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둔다. 이들은 흔히 大學教授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高等教育 全般에 걸친 폭 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정부기관의 高位행정직을 맡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규모가 큰 財團의 간부직이나 큰 대학의 부총장 혹은 작은 大學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을 여기에서 일일이 들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大學協同委員會(C.I.C.)에 제시해야 할 아이디어의 개발이다.

이들이 개발한 이런 아이디어를 대학협동위원회에 제시하면 同委員會는 간부직원들에게 아이디어의 實現可能性, 適切性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예로 간부직원들은 大學協同委員會의 特任小委員會의 協助를 얻어 일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간부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회원대학들이 각기 대학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드는 막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를 타진하는 것이다. 회원대학 총장들은 대학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점증하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데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래서 大學協同委員會 사무총장은 일년에 두 번씩 회원대학 총장들을 만나 이 문제를 協議하고 總長들의 계의를 받아들여 이 문제 해결의 可能性을 탐색한다.

여기에서 考察된 制度가 會員大學間의 學術雜誌 中央圖書館 設立이다. 오늘날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主題分野를 완전히 포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資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회원대학간의 協同業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主題分野일지라도 그 分野의 흥수처럼 밀어 닦치는 새로운 출판물을 떼 맞추어 전부 갖추어 놓기란 대부분의 會員大學 圖書館도 그 能力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간부직원들은 중앙도서관을 設立함으로써 일차적으로 大學間에 막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할 학술잡지 만도 2만권에서 3만권 정도이다. 이 학술잡지 가운데는 이미 폐간된 것도 있고 현재까지 계속 간행되는 것도 있다. 美國 大學圖書館은 신간서적을 구입하도록 책정된 예산 중 절반 이상의 돈이 學術雜誌 購入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술잡지의 대부분이 독자들에게 활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는 더욱 크다. 학술잡지는 단순히 그것이 학술잡지라는 이유만으로 대학도서관마다 반드시 비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대학교수나 학자들의 생각이다. 大學 圖書館의 한 專門職員은 大學이 구입하는 그 많은 학술잡지 가운데 10%나 20% 정도나 자주 읽히는 편이나 80%나 90%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학술잡지를 모든 대학도서관이 購入하여 비치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때 會員大學間에 중앙도서관을 설립하여 학술잡지를 공동으로 購入하여 운영하면 상당한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教授나 學生들은 자기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중앙도서관에 비치된 잡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學圖書館과 중앙도서관에 텔레타이프를 設置하여 신청해 온 잡지, 기사를 전자복사하여 신청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 會員大學間에서는 도서의 相互貸與를 함

으로써 많은 정보와 지식에 접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大學協力體制(consortium)는 거의 모두가 大學協同委員會(C.I.C.)와 같은 形態로 設立되어 運營되고 있다. 대학협력체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온다는 사실은 대학 협력체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간부직원으로서의 事務總長이 會員大學을 설득시켜야 하는高度의 技術과 指導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II. 大學院 協力體制의 構築方案

현재 우리 나라의 大學院教育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課題는 學生人口의 急增에 따른 質的管理와 均衡의 發展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課題와 관련해서 必要條件은 유능한 教授의 확보와 圖書 및 施設의 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大學은 강한 財政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大學院間의 協力體制構築을 통해서 人的, 資源 및 物質의 共同活用이 절실하다.

요컨대 大學院間의 相互協力を 통해서 制限된 人的 및 物的 資源을 共同으로 活用해 함으로써 大學院教育의 質的 水準向上과 均衡發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大學院教育의 커다란 當面課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觀點에서 大學院協力體制構築의 方案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 協力體制構築의 方案은 ① 他大學의 一般大學院 및 專門大學院間의 協力 ② 동일 大學內의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間의 協力 ③ 동일 大學內의 大學院 및 專門大學院과 學部間의 協力 ④ 大學院과 獨立研究機關과의 協力 등으로 구분하여 구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1. 他大學의 一般大學院 및 專門大學院間의 協力

他大學의 一般大學院 및 專門大學院間의 協力은 ① 學點의 相互交流, ② 共同講義開設, ③ 圖書館의 共同活用, ④ 實驗施設의 共同活用 등으로遂行할 수 있을 것이다.

學點의 相互交流는 畢業學點의 一定比率(예컨대 1/4 내지 1/3까지)을 他大學院 또는 專門大

學院에서 受講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學點을 상호 認定하도록 하는 方法이다. 이때 學點의 交流는 正規學期뿐만 아니라 여름學期의 활용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여름學期를 활용하게 되면 地域의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과의 交流도 가능할 뿐 아니라 職場을 가지고 있는 一般大學院 학생에게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學點의 相互交流는 동일 大學內의 大學院 또는 專門大學院에서 開設할 수 없는 특수 과목에 우선 순위를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他大學의 大學院 또는 專門大學院과의 共同講義 수행과 學點을 상호 認定하는 것은 다른 인접 대학의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때는 이수학점의 제한도 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共同講義를 위한 人件費와 場所 등은 協力大學院間의 協定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의 共同活用은 도서의 상호 대출, 도서관 이용의 상호 허용, 학술잡지의 공동구입 등의 方法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協力關係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協力大學間의 圖書共同目錄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서의 상호 대출을 위한 규칙이나 도서관 이용 카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큰 大學圖書館이라 할지라도 모든 主題分野를 전부 포함하기에는 불가능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는 主題分野일지라도 그 분야의 홍수처럼 밀어 닦치는 새로운 출판물을 때 맞추어 전부 갖추어 놓기란 거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共同活用은 절실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圖書購入費에 限界가 있는 우리나라의 大學 財情에서는 이러한 協力가 더욱 절실하다.

實驗施設의 共同活用은 理工系分野에서 크게 요구되며 이는 協力大學間의 協定에 따라 研究主題別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大學財政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실험시설의 共同活用뿐 아니라 實驗室의 共同設置와 實驗機器의 共同購入까지 구상할 수 있는 次元까지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동일 大學內의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間의 協力

동일 大學內의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간의 협력은 ① 履修學點의 上호 認定, ② 講義의 共同開設運營, ③ 學事行政의 協力 등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동일 科目과 동일 學點數로 開設되는 教科目은卒業學點數에 제한 없이 상호 認定함으로써 학생들에게 學點履修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協力關係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동일 科目的 경우는 동일 學點數가 되도록 教育課程을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간의 講義의 共同開設運營은 동일 大學內에서 開設되는 教科目의 重複性을 피하면서 학교당국의 經費를 節減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教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教育의 質向上과 학생들에게 受講의 편이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笔者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K大學의 경우 教育大學院 穩士課程은 10개 科目이, 經營大學院 穩士課程은 12개 科目이 각각 一般大學院의 해당 전공과 동일 科目으로 重複開設되고 있다. 이러한 重複開設을 피함으로써 經費節減이나 학생들에게 履修의 편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講義의 共同開設運營을 위해서는 역시 동일 科目的 경우는 동일 學點數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學點의 조정은 專門大學院 穩士課程의 履修者가 一般大學院 博士課程에 진학할 경우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學事行政의 協力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行政的 協力關係 維持나 行政的 統合調停을 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필요 이상의 行政的分化는 學事行政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學校當局의 經費를 낭비하는 要素가 되고 있다. 따라서 教育機能은 學部가 있는 해당 대학에 위임하고 行政機能만 統合된 大學院에서 관장할 수 있는 體制로 大學院教育을 운영하게 되면 大學院 學事行政의 效率性 提高는 물론, 經費節減 그리고 學位 수여의 水準維持 effect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동일 大學內의 大學院 및 專門大學院과 學部間의 協力

동일 大學內의 大學院 및 專門大學院과 學部間의 協力은 學部의 上級科目와 大學院 및 專門大學院의 基礎科目의 共同受講을 권장하고 그 履修學點을 상호 認定하는 方式으로 수행할 수 있다. 教育內容의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學士課程의 上級科目과 硕士課程의 基礎科目을 共同으로 受講케 하고, 여기에서 履修된 學點을 大學院 또는 專門大學院에 진학하게 되면 硕士課程의 요구 學點數에 一定 比率로 加算하여 認定케 하는 것이다. 다만 學士課程에서 요구하는 卒業學點을 초과하여 履修하였을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協力關係는 硕士課程의 教育年限을 단축시킬 수도 있으며 동시에 大學의 經費節減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學士課程의 教育內容과 硕士課程의 教育內容間의 重複性을 피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學部와 大學院 및 專門大學院間의 協力關係는 개방된 硕士課程의 入學者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硕士課程의 入學資格이 學部의 專攻에 구애됨이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入學과 동시에 他學問 專攻者에 대한 先修科目의 履修를 학부와의 協力を 통해서 원만하게 이룩할 수 있다.

### 4. 大學院과 獨立 研究機關과의 協力

대학원과 獨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研究施設의 共同活用과 人的 交流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自然系의 경우 制限된 大學의 研究 시설을 가지고서는 大學의 碩・博士課程의 研究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다. 따라

서 獨립 연구기관과의 협력關係를 가지고 研究를 수행할 수 있는 方案이 절실한 것이다. 教授의 交流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大學教授不足現狀은 대학원교육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해당 전공분야별 獨立 研究機關의 人的 資源을 겸직 또는 협동교수 등의 方式으로 대학에 유치하여 교수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네 가지 協力方案 이외에도 外國 大學院間의 协力, 教育器材의 共同購買, 公同 학위수여, 교육시설의 공동 운영 등 여러 가지 方案을 구상하여 볼 수 있다. 다만 지면 관계로 이에 대한 기술은 피하기로 한다.

## IV. 맺는 말

大學院教育의 協力은 위에서 記述된 바와 같이 人的・物的 資源이 풍부한 先進國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實現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절대적으로 制限된 教育財政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大學院教育에 있어서도 절실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大學院學生의 量的 평창을 감수하면서 質的 水準維持와 均衡發展이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大學院教育에 있어서의 協力體制構築은 매우 時急하다고 본다.

다만 위에서 제시된 協力方案은 實踐이 가능한 分野에서부터 그리고 地域的으로 가능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全國的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主導的 役割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담당하고, 참여 대학과의 自意的인 協力하에서 실천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